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6

발의연월일: 2024. 6. 12.

발 의 자: 권칠승·송옥주·민병덕

서영교 · 김종민 · 홍기원

문금주 • 임호선 • 이병진

김용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징역·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(無期)를 규정하고 있으나,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(行狀)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음.

그러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던 범죄자의 경우 에는 가석방 후에도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는 것임(안 제22조).

법률 제 호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지 않은 무기형 수형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는 경우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)	제22조(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지
	않은 무기형 수형자로서 형의
	집행 중 가석방되는 경우 가석
	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
	<u> 여야 한다</u>
<u>③</u> ~ <u>⑤</u> (생 략)	<u>④</u> ~ <u>⑥</u> (현행 제3항부터 제5
	항까지와 같음)